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 첼바퀴에서 벗어나기

2006년 3월 31일 금요일

숭실대학교 전산관 406호

주최 : 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
여성주의자연대

- 고려대학교여학생위원회 관악여성주의자모임
성균관대학교총여학생회 숭실대학교여성주의모임(준)
연세대학교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여성위원회

순 서

기조발제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 챗바퀴에서 벗어나기	3
	데이트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8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19
	환경적 성폭력을 공략하다 - 인식하기 / 명명하기	28

-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 자연대 -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 첩바퀴에서 벗어나기

0. 들어가며

‘성폭행=강간’ / ‘강간>강간미수>성희롱’ 이러한 기존의 인식은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는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비판을 시작으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은 ‘성폭행’이 아닌 성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개념을 확장시켰다. 성기삽입 여부가 아닌 성을 매개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성폭력(sexual violence)이라 정의하길 주장한 것이다. 이는 성폭력의 본질을 바로보고 그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자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적자기결정권, 피해자 중심주의 등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많은 공간에 균열을 내며 자치규약, 반성폭력학칙 제·개정 등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을 말할 때 성적자기결정권과 피해자 중심주의 등의 ‘전문용어’를 쉽게 사용한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국회의원의 당파싸움에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왜곡된 의미로 남발된다.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디서 들어서 혹은, 중요하다고해서 알고는 있는데 체화하지는 못한 것이다. 정작 사용하는 말 속에 자신과 소속 공간을 대입시키지는 못하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성차별적 문화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만 많아진 사회인식에 더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분석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한다.

1.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

예전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치규약은 분명 성폭력 그 자체를 담론화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론의 '시작' 이후, -현실적 유효함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다- 담론의 구체화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나는 언제부터가 '전형적인/올바른 피해자 상'을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동적이고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의 통념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느 날 문득 사건과 피해자를 마주한 내가 '여운단위를 찾아오는 피해자는 모두 자치규약이 말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원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관련된 편견을 말하는 것이다. 나 역시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에 대해 반드시 '올바른'-'내'가 옳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되었다.

누가 꺼내는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통로와 함께 자치규약에 따른 '올바른'-이 옳바름은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이 되어버린다.- 성폭력 해결 방식의 리스트를 들고 있는 섬뜩한 순간을 종종 마주하게 되었다.

몇몇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며 기존의 텍스트화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모든 일상적인 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름으로써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성폭력'이라 묶음으로써 많은 경험들이 단일화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사건의 유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사건을 대면하는 해결주체로서의 여성은 택하기 힘든 여러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도 그러하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도, '피해자'에 대한 정의 역시도 그러하다. 모든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서 있지는 않다. '직접적인'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이 분명한 성폭력이라 생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당황하고 기존의 개념에 대입하려 애쓰지는 않았는지. 이제 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이 새로운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양한 권력관계가 얽혀있는 실태

성폭력을 이야기 하며 단지 ‘여/남’ 간의 권력관계로만 정리해 버리는 것이 점점했다. 기타 등등의 모든 배경을 버리고 성별권력관계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뭔지 손해 보는 느낌이랄까.

수업시간에 뿔소리하는 교수에게 감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제제기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단지 ‘남자’ 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단지 ‘교수’ 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하지만 권력은 ‘남자’이고 ‘교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남교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개의 막강한 권력이 합해진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마치 장애인 여성이 ‘장애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이 아니라 두 정체성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억압을 만들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교수와 남학생의 관계에서 여교수를 대상화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순히 교수/학생간의 권력관계조차 뛰어넘은 성별 권력관계라 말하기는 부족하다.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르는 기대 때문에 여교수는 남학생에게 문제를 지적하기 더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교수의 문제발언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여학생인 나의 경우 역시 그동안 말해왔던 ‘여/남간의 권력관계’로 설명하기 힘들다.

‘성폭력은 권력관계에 기반 하여 발생한다.’ 관계 속에서 그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양상- ‘여/남’ - 으로부터 나타지 않는다. 더하여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 간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게 만들어 지지 않는다. 관계와 관계가 또 다른 관계를 만들기도 하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권력은 이전 관계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다.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맺고 있는 관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황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3. 사건해결 지원의 어려움

제반적 문제

공간을 학내로 한정시켜 두었으니 법은 차치하고라도 학칙과 상담소 등의 학내 제도적 기반이 문제다. 3쪽 남짓한 학칙은 아직도 강간중심의 사

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있으며 2차 가해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지 않은 곳이 많다. 이외에도 모호한 말로 가해자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등 하여 학내에서 학칙만으로는 사건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상담소 역시도 성폭력사건 전문상담가가 없는 것은 보통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재자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학교의 의지부족으로 학칙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소가 부재한 곳도 상당수이다.

피해자와 사건해결주체로서의 여성주의자의 소통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적”인 방식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득해야 할지에 대한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녀의 요구를 나의 임의로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의 생각들을 고수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역시 마찬가지이다.

전화해서 집을 주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중간에 그냥 접어버리자고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양한 피해자의 요구와 변수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가지는 공감을 접어두고서도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끔 한다. 다양한 생각을 피해자중심주의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것, 피해자의 요구를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결주체로 서게 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주의자가 헤치고 나가야 할 문제로 남겨져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양한 대안과 소통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올바른 피해자상”을 상상하며 “여성주의적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한 여운단위의 “성과”남기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말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되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중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물론 이때 타자화, 대상화에 대한 경계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나와 해결주체로서의 나를 분리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머릿속 고민들을 공론화할 때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4. 켓바퀴 벗어나기

학내 반성폭력운동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기존의 담론과 운동방식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몇 번의 세미나와 현재 학내 사정에 대한 나눔을 바탕 하여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을 “교과서”처럼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건 해결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학내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개편의 요구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선토크방식에 있어서는 변화 아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며 속 끓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조금 더 쉽고 친/절/하/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발제하게 될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오늘 토론회의 outro는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열띤 토론으로 함께 쓸 수 있도록..

데이트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0. 들어가기 전에

본 발제는 발제자 본인이 피해자로서 경험했던 데이트 성폭력 사례와 그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후 기록으로 남을 발제문과 본 발제 자리에 대해 발제자가 갖게 되는 부담이 있지만, 최근 데이트 성폭력이 소속 여운단위에 신고 접수된 일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피해자의 해석과 주변 상황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사례이기에 선택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발제자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역시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밝힌다. 읽기 편한 글과 어색하지 않은 말하기를 위해 본인을 일일이 '발제자' 또는 '피해자'로 지칭하기보다는 '나'라는 일인칭 시점을 사용하기로 한다.¹⁾

나는 대학 성폭력상담실에 데이트강간 피해를 신고하여 약 2개월 간의 사건처리과정을 거친 경험이 있다. 가해자 (이후 A로 지칭)와는 사건이 일어나기 반 년 전쯤 두 달 정도 연애편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나는 A와 나는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일종의 긴장상태에 있었지만 서로의 관계를 '연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²⁾

- 1)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발제문이 발제자가 소속한 학교 및 단위까지 공유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나'로 지칭하지 않고 3인칭을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최근 총여학생회에서 열었던 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여성주의자'라는 신뢰 하나만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이야기해준 여성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례를 '나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용기가 내게 준 감동과 힘에서 비롯되었다.
- 2) 데이트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연애하는 중이나 아니냐'의 이분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위험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서로를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1:1의 배타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애인 사이'로 규정하는 일종의 약속 또는 퍼포먼스가 관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면을

사건은 A가 나의 자취방에 온 날 대화를 나누다가 키스 등의 스킨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A와의 성적 접촉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A가 완력을 사용하며 성기삽입을 시도했다. 나는 A를 밀어내려했지만 실패했다.³⁾

나는 당시의 강제적인 상황이나 나의 고통을 어떻게 의미화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A와의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고, 1개월 정도 연애편계에 있었다. 강제적인 삽입으로 인해 몸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툴었던 성관계'로 생각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몸의 고통이 가라앉은 뒤에도 마음은 계속 불편했고 혼란스러웠다.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 A에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A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회피했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날의 일을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내가 갖게 된 상처를 여성주의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과 큰 관련이 있다.⁴⁾ 결국 나는 A와 두 번째 연애편계를 종결한 지 반 년 후에 A를 만나 당시의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학내 성폭력상담실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A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나는 반년이 더 지난 뒤 학내 상담실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정체성을 '감당하기'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후 몇 주 동안 나는 A의 성폭력 가해를 '연애 과정에서 고려하여 이 부분을 설명하였다.

- 3) 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매우 고민했다. 강간을 나의 기준에서 '저항에 실패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치 내가 '저항에 성공'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인 완력의 차이 뿐 아니라 성기에 가해지는 통증으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내가 저항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의 기억을 설명할 때에는 여전히 내가 '그를 막는데 실패한 것'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는 그 전에 연애편계에서 내가 성적 접촉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사후적 해석에 대해서는 <'성폭력' 개념 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에 대한 연구> (배지선, 2003,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은 논문이었다.

일어난 서투른 성적접촉'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A와 '준비된' 성관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콘돔 사용 등을 설득해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A는 자신의 성보수주의적인 종교관을 이유로 성관계를 '준비하는 것'을 매우 내켜하지 않았고 결국 콘돔을 사용하긴 했지만 성관계는 전혀 즐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나는 A와의 연애를 '서로의 감정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성급한 행동'으로 결론짓고 합의 하에 연애관계를 종결했다.

그러나 A와의 연애관계를 종결한 후 나는 내가 '데이트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점점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 날의 몇몇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나의 상처를 휘젓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데이트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는 나를 '데이트강간 피해자'로 정의하면서 정작 그 피해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나의 경험을 '데이트 강간 피해'로 의미화하면서 스스로 감당해야할 언어화 과정의 고통이었다. 나의 성적주체성에 대한 좌절과 몸에 각인된 무력감, '그런 남자'를 '선택하여' 연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 전에 겪었던 다른 성폭력 피해에 비해 '데이트성폭력'은 나의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키면서 상황을 정리하기가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이다. '연애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고,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여기던, '내가 그리던' 또는 '내가 인정할 수 있던' 나를 무너뜨리는 듯 했다. 5)

해결을 모색하게 된 힘

나의 경험을 '데이트강간'으로 의미화하게 된 이후에도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여운단위 활동을 하면서 심경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과 몸을 바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두고 사건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또한 여운단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데이트성폭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5) 각주 4)에서 언급한 배지선의 논문은 개인적 친밀함, 소속 집단내의 관계 등이 데이트 성폭력에서 '경험해석의 압력'으로 작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배지선, 2003, p45)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둘러싼 '협상'을 통해 이성애 연애관계의 규칙이 작동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연애관계 안에서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p111)

곧 '데이트성폭력'을 의제화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이것은 사건을 공론화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예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학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反성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인 나와 '성폭력 피해를 정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데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뒤 성적 접촉에서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세미나에서 '데이트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의 당황하는 등의 피해후유증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공론화할 것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A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당시에 '생각하기 싫다'는 말로 사건을 회피했던 것 역시 잘못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A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다시 A를 대면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당시의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나의 감정과 느낌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설명을 마치고 교내 성폭력상담실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A에게 자신의 성적 실천이 폭력적임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을 때, A는 내가 고통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나의 권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당시의 일을 '성폭력'으로 경험한 것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있는 일이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A의 태도는 나에게 다시 상처를 남겼다. 이후 여운단위 활동을 하면서 A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데이트성폭력은 나에게 계속 숙제로 남아있었다. 바쁘게 지내는 동안 사건에 관한 감정이나 기억은 묻어둘 수 있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다.⁶⁾ 결국 나는 소속 여운단위 활동이 어느 정도 정리된 연말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학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를 했다.⁷⁾

6) 내가 사건 신고를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매우 놀랐던 일 중 하나는 내가 '있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상황을 한 번도 쉬지 않고 A4 한 쪽이 넘는 글로 써내려갔다는 것이다.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말하기 위해 혼자 끊임없이 연습했던 사람처럼 사건의 정황을 하나의 서사로 완성하고 있었다.

7) 이 때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개최한 3회 생존자말하기 대회 참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용기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나 타자화로 인해 겪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치유의 과정으로 한 걸음 이끄는 모습이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내가 입은 피해의

2.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의 사건’에서 지속적인 폭력으로

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담실과 논의를 거치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A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연애 당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지 않았던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비디오방이나 나의 집 등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 있을 때 A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이다. 이성애 성기결합의 경험이 없던 나는 각자가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안전한 피임을 고려하는 것, 다시 말해 준비된 성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여성주의자 커뮤니티에서 나누었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기도 하다. 나는 반복적으로 A에게 피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A는 언제나 ‘자신이 충동적으로 성기삽입을 시도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생각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번 대화를 했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갑작스런 성기삽입 시도가 있을 때는 A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꾸짖듯이 말하곤 했다. 나는 A의 그런 행동에 위협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피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나도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성적 행위를 즐길 권리가 있고, A가 성기삽입을 시도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관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갑작스럽게 성기결합을 시도하는 A의 모순된 태도는 나를 점점 지치게 했고, 때로는 A가 나를 ‘유혹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A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고 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었고, 나는 A의 욕망에 ‘불을 당기거나’ 그 욕망을 ‘눌러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결국 나는 A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겪은 ‘데이트성폭력’이 상담실에 신고한 하나의 사건으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해진 것이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험이 나에게 가진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피해를 진술하기 = 고통을 증언하기?

나는 상담실에 진술서를 보낼 때 A와의 관계 및 사건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에 매우 초점을 맞추었다. 후에 학내 상담실에서 이 사건을 성폭력대책위원회⁸⁾에 올릴 경우 내가 입은 '피해'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매우 거부감을 느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성폭력대책위원들 앞에서 피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성폭력피해로 인한 '고통'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이는 매우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뿐더러 '고통에 빠져있는 피해자'라는 수동적인 피해자상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강간 피해 후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로 여겨지는' 증상들 - 외상, 플래시백, 정신적 혼란과 충격,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의 무력감이나 슬픔, 분노 등 - 을 겪지 않았다면 나의 경험은 강간이 아닌 것이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해석은 나의 피해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지 못한다는 가부장적 언설 앞에 정면으로 부딪힌 기분이었다.

물론 고통의 감정을 꺼내어보는 과정은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한 목적이 아닌 증명과 협상을 위한 '고통 말하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피리 앞에서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나의 경우 강간이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 그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의 '고통'을 설명하는데 대한 부담이 적었지만, 다른 유형의 사건들에서는 피해자가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사건처리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증언으로 성폭력을 납득시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교수, 교직원, 학생 대표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공식의결기구이다. 상담실 차원의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건처리를 논의한다.

9) 사건 처리가 종료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지원을 받으면서, 나는 내가 미처 다 쏟아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꺼내어 흘려보내고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 겪었던 감정의 물결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면서도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언제나 동의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었던 가해자

본 사례는 상담실의 중재치리로 종료되었고, A가 끝까지 자신을 '성폭력가해자'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피신고인'과 '신고인'으로 필요한 서류 등을 마무리하였다. 상담실과의 조사면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평소에는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을 때 뚜렷하게 거부했는데 그 날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¹⁰⁾ A가 정말로 내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애쓴 것을 느끼지 못했다 해도, A와 첫 번째 연애편계에 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차례 반복해서 설명한 것, 그리고 실제로 거부했던 것은 A에게 몇 개월도 안 되는 유효기간을 지닌 의사였던 것이다.

나는 A의 머릿속에 있는 '동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A가 말하는 나의 '뚜렷한 거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돌이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A와의 연애편계 동안에 가졌던 성적 접촉에 대해 내가 동의 또는 거부했는가가 아니라, '어째서 A는 항상 요구하는자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A는 내가 언제나 성적 접촉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표현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내가 발휘했던 '나의 주장', 즉 '주체성'은 나의 욕망을 표현하고 실천하기 위한 주장보다 나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을 거부하기 위한 부분이 더 컸다. 나의 성적 욕망에 대한 협상은 성폭력적인 상황을 수반할 수 있다는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또는 결국 성폭력과 맞닥뜨리면서 이루어졌다. '요구하는 자'와 '수용하는 자'가 성별화 된 이성애 연애편계의 가부장적 각본은 가해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동의'에 맞서 나의 '거부'를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을 종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자'가 아닌 '중재자'로서의 학내 상담실

신고를 한 직후 상담실 측과 사건에 대한 논의, 또는 추가진술을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점은 '자신의 충격과 감정을 어찌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찾아온 피해자' 상에서 벗어난 나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었다. 평소에도 나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편이 아닌데다, 울거나 분노

10)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 A가 과연 어떠한 종류의 '생각'을 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하는 것은 사건의 처리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을 누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나의 태도와, 상담실과 어느 정도는 '동료'적 입장에서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건처리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¹¹⁾ 이는 학내 상담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식적 처리기관'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사건에 대한 여성주의적 견해와 원칙들을 갖고 있지 않은 학내 상담실이 '중재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건의 처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거나 가해자의 폭력적인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담실에서는 내가 요구사항을 조정하거나 다시 확인할 때마다 서류상의 기록 변화에 중점을 두고, 나의 요구사항이 사건처리방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¹²⁾ A가 나의 '동

11) 사건처리과정에서 상담실 측이 여운단위 주체인 피해자에게 사건처리과정을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권력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남성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것 같다'고 한 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추스리기에 바쁜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사건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상담실에서는 나의 사건을 소홀히 다루었거나 나에게 특정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뜻이 아니다. 상담실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중재경험을 나에게 이야기한 것이거나 (여운단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건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종종 있듯이) '여운단위 활동가'인 피해자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염려되는 점들을 솔직히 표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 상담실에게 '익숙한', 또는 '기꺼이 처리하게 되는' 사건의 정형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의 피해 사례가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건 처리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상담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여성주의적 훈련을 통해 (상담실의 도움없이) 사건을 해석하고 정리해나간다는 (또는 이미 정리를 끝냈다는) 믿음에 기반한 상담실의 말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왜 이제야 신고를 했느냐'는 말과 '(가해자가 물었던 말이라 물어보는 건데) 혹시 본인이 여성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신고한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12)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을 때 이것이 '보상금'인지 '심리치료 지원비'인지의 문제, 가해자에게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영수처리를 하는 문제 등이 사건처리과정에서 갖는 의의를 논의하려고 했을 때 상담실 측이 '상담실에게 왜 입장을 묻느냐,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다'라고 하며 논의를 회피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요구사항으로 두지 않은 가해자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담실이 교육을 수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의'를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상담원 동석 하에 A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으나 A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³⁾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당시의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나의 요구사항이 과연 내가 의도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이 정형화되어있음을 고민하는 여운단위 주체로서,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치중하는 상담실이 성폭력사건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생각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동의와 거부의 이분법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는 가부장적 시각은 피해자의 섹슈얼리티 실천 경험과 문제제기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는다. 특히 데이트성폭력피해자가 연애관계를 종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연애종결을 거부하고 싶은 욕구를 성폭력 문제제기로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편견은 너무나 익숙하다.

그러나 정말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해당 상황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만큼 성폭력과 성관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이다. 가해자라고 해서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해석하는 것도 사후적이지만, 가해자가 '성관계'로 인식하는 것

13) 상담실은 가해자의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사건처리가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시험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면담을 잡거나 나에게 보낸 메일에 항상 가해자의 이름을 A '학우'로 표현하고 가해자 교육을 직접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가해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가해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불만은 이 것이었다. '피해자인 나에게 굳이 그 배려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역시 사후적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가해자는 당시의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동의'를 구성해내는 것이다.

경험 해석의 과정에서 치유로

데이트성폭력은 사실 매우 애매한 범주에 속한다. 데이트성폭력을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연애관계'로 서로를 규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거나 소속 집단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역시 피해가 더욱 유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가해자와 맺었던 관계의 양상, 주변 사람들의 개입,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적 접촉을 연애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며 성적 접촉에 대한 허용 여부를 연애감정의 '진실함'으로 연결시키는 가부장적 논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성폭력 피해로 인식하고 문제제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¹⁵⁾ 따라서 사건을 지원할 때 피해자의 변화하는 해석 과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변화를 낫설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처리과정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피해자가 깊어질 기억과 관계는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해석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그 힘으로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¹⁶⁾

14)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트강간이나 데이트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미국의 'Date Rape'을 그대로 따오면서 어색해진 감이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우선 '데이트'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고, 연애관계에서는 성적으로 배타적이어야 하며 성적접촉은 연애관계에서만 허용된다는 성에 대한 규범이 좀 더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 '데이트'하는 사이의 성폭력이라는 것이 연애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 내지 못한다는 의견이었다.

15) 신상숙은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2001, 여성과 사회 13호)에서 피해자의 의사표시 여부를 살피기 전에 가해자의 성적 행동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피해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를 질문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16)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의 침투해있는 권력관계를 의미화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로 보아야한다는 김신현경의 논의는 성폭력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시사해준다.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김신현경, 2001, 여성과 사회 13호)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에 저항하기

여성의 몸을 향한 가부장적 시각과 남성의 폭력적인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여성의 성적 실천이 성폭력의 상황과 이어질 수 있는 긴장감을 지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면, 아니 이 스펙트럼의 끝과 끝 사이에 있는 많은 일들을 여성의 목소리로 꺼내는 것은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이며, 나는 이 글의 의의를 여기에 두려고 한다. 얼마 전 여성전용 대학커뮤니티에 가입한 나는, 익명으로 되어있는 연애편지판에 즐겨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혼성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너무 심각하여, 여성들끼리의 웹 커뮤니티에는 성폭력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나의 예상은 즐겁게 빗나갔다. 남성들이 자신의 확장적인 섹슈얼리티를 소모적이면서도 폭력적으로 부풀릴 동안, 여성들은 성적 실천과 그에 따른 주체적 협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성폭력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성적쾌락을 느끼는 나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든 성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의 힘은 나와 함께 하는 여성주의자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준 모든 여성들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¹⁷⁾

17) 이 경험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여운단위 친구들과 3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단 및 참가자, 그리고 상담지원을 해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교성절연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3일, 「대학 내 강의 중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고대 K교수의 강의 중 언어성폭력¹⁸⁾, 이후 해임된 전북의 'O' 대학 'H'교수의 성희롱 사건¹⁹⁾을 통해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던 때에, 강의 중 언어성폭력 실태를 알리고 학생들이 언어성폭력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언어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고자 공청회가 기획되었다.

당시 논의되었던 주요한 지점은 첫째로, 강의 중 언어성폭력이 심각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어렵고, 문제를 느끼더라도 언어성폭력으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으로 '언어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 사건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셋째로, 교수의 언어성폭력 사건화의 결과가, 수업 중단, 교수 징계 및 교체로 이어질 경우 제기되는 주장²⁰⁾-교수의 수업자율권과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에 대해 비판하였

18) 사례① "취업을 못하는 사람의 기분은 강간당하고 싶어도 당하지 못하는 늙은 여자의 심정과 같다."라는 발언으로 2005년 공론화된 사건.

19) 사례② "요즘 여대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남자를 파는데 학벌이 좋고 얼굴이 예뻐수록 남자 가격이 비싸다"고 한 뒤 한 학생에게 "너 정도면 남자 값이 비싸겠는데..."라고 발언함으로써 2005년 공론화된 사건. 해당 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그 밖의 언어적 물리적 성희롱이 폭로되면서 해당 교수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전북 'O'대학 'H'교수의 표기는 당시 인터넷경향신문의 보도에 사용된 표기를 따른 것이다.

20)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고대 K교수의 발언을 사건화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고, 넷째로, '교수성폭력'으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해, 몇몇 대학에서 이뤄진 활동과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공청회의 문제의식을 더욱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보다 세부적인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1.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일반적 규정>에서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할 것이며, <2. 강의실 언어성폭력의 특수성>에서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피해자'와 '제보자', 그리고 사건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지위를 규정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제도적 해결>에서 대학당국의 자체적 예방과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글에 이용되는 실제 사례는, 각각 각주를 달아 '사례①, 사례②, ...'로 표기한다.

1.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일반적 규정

1.1. 성희롱과 성차별로서의 강의 중 언어성폭력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이는 물리적, 언어적, 환경적 성희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있어 '성희롱'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교수의 언어행위를 말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발언,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성차별'로서의 강의실 언어 성폭력은 여성성에 대한 비난, 여성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강요, 여성을 배제한 남성중심적 언어사용 등을 통해 여성에게 부차적이거나 열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독해보인다.'등의 발언은 실제로 특정 여성에게 향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 전체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발언에 당면한 여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취업, 대학생활 등에 있어 남학생에 비해 소외된 지위에 놓이게 한다.

이와 같이, 강의 중 언어성폭력을 '성희롱'과 '성차별'로 언어화하는 것은

무엇이 강의 중 언어성폭력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성희롱은 그 내용에 있어 여학생을 소외시키면서 남학생과 다른 학습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언어성차별 역시 성적 발언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희롱'과 '성차별'은 언어성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지만, 언어성폭력을 분류하는 잣대로 쓰일 수는 없다.

1.2. '강의실 성폭력'으로서의 강의 중 언어성폭력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동시에 강의실의 모든 성폭력(물리적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에 대해 민감함을 유지하고, 언어성폭력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교수의 언어행위'외의 성폭력적 요소를 밝혀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폭넓은 의미로서 '강의실 성폭력'을 설정하고 강의실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발표 조를 짜기 위해 여학생들을 교실 앞에 세워놓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자기 조로 뽑아가게 한 사례²¹⁾나, 'o'대 'ㅎ'교수의 성희롱 등의 사례²²⁾처럼 언어성폭력 뿐 아니라 성차별이나 물리적 성희롱 등에 대해 '강의실 성폭력'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다. 또한, 교수가 여성의 신체부위에 대해 설명할 때, 신체가 그려진 삽화나 사진 등의 특정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불필요한 제스처를 취하여 불쾌감을 주었던 사례²³⁾에서 발언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발언에 성폭력적 맥락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수강자들-주로 남학생-의 반응 역시 가해의 일부로 존재함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므로 '강의실 성폭력'이라는 넓은 범주 속에서 교수의 발언, 동작, 강의 방식과 자료, 강의실 시설, 수강자의 태도 등의 요소를 생각할 때, 언어성폭력 역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21) 사례③

22) 사례② 각주 2)와 같다.

23) 사례④

2.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특수성

강의 중 언어성폭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개별 사례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일이나, 문제 발언의 유형을 구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언어성폭력을 성희롱과 성차별로 언어화하는 것도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발언 내용'상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지만, 사건 해결의 원칙이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이 지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반성폭력 담론,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황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제는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2.1. 피해자와 제보자

구성되는 성폭력, 존재하는 성폭력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경우, 교수의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과, 그것을 '피해'로 해석하는 것 사이의 모호함이 있었다. 자신을 '피해자'로 정체화한 경우, 피해자로서 사건해결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제3자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문제제기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의 중 언어성폭력은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서의 성폭력'을 넘어선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 언어성폭력 사례를 보자.

사례⑤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 번 발표해보라.

사례⑥ 안동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창호지로 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데, 우리 수업도 그래야하지 않을까.(시끄러워서)

사례⑦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을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하고 늙어 가는 여자의 심정과 같다.

사례⑧ 요즘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문제다.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례⑤의 경우 특정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다. 사례⑥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다. 위 두 사례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도된 말이라는 점에서 그 발언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 ‘불쾌하다’, ‘사과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로서의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사례⑦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하고 늙어가는 여자’는 강의를 듣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강간을 원한다’,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아직 성적매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등의 남성들의 폭력적인 성 각본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례⑧의 발언 역시, 강의실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출산을 필수적인 여성의 역할로서 강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례⑦, 사례⑧의 경우, 불쾌감의 근원은 그것이 ‘나’를 대상으로한 언어행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말이고, 이러한 발언은 수업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의 지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수의 태도가 여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접근과 참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닐지라도 성폭력의 맥락은 존/재/한/다.

성폭력을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위

반성폭력 운동에서 ‘성폭력’을 말하는 주체로서의 ‘피해자’를 강조해왔던 것은 성폭력이 구체적인 상황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세부적인 성폭력의 맥락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한 편으로, 이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정체화한 사람만이 성폭력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의 가부장적 시각을 지양하기 위해 ‘피해자’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이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적 발언이 다수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발언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도 성폭력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고,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다.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제기는 유효하다. 또한, 해결에 있어 ‘피해’에 근거한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교수로서의 반성, 모든 학생들에 대한 사과 및 발언 정정, 발언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근거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총

여학생회나 성폭력 상담소등을 통해 언어성폭력에 대한 해결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러한 경우 문제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한 사람은 '제보자'로 존재할 수 있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의 목소리를 요구받는다. 이는 교수의 '가부장적 가치관', '부족한 의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있는 발언에 대해 '성폭력'을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활발한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사건 해결에 있어 '피해자'와 '제보자'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경우, 발언의 맥락이 교수와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간관계(지도교수, 친분있는 경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강의자와 학습자라는 일반적인 관계 속에만 위치할 수도 있다. 또, 개인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할 수도 있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할 수도 있다. 성폭력의 맥락을 형성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관계를 밝히면서, 다양한 사건 해결에 있어 '피해자'와 '제보자'를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사건화와 동시에 피해자가 드러나는 경우

우선 교수가 특정 개인에 대해 성폭력적 발언을 한 경우, 문제제기와 동시에 피해자가 드러나게 된다. 이는 성폭력 발언을 목격한 '제보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개인을 향한 성폭력적 발언 중, 어떤 경우는 '피해자' 개인만이 문제를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누구나 발언의 문제를 느낄 수도 있다.

· 사건화 및 공론화 '피해자'가 사건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다. 교수에게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피해를 밝히고 해결을 요구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보자'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하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화할지 '제보자'를 중심으로 사건화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²⁴⁾

24) 강의 중, 교수가 한 여학생에게 치마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주의를 주자 발언의 대상이 된 그 여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그 자리에서 발언의 성폭력성을 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사례⑨) 하지만 이는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피해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피해자'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의 방식과 피해자보호가 고려되었어야 했다.

· 성폭력 피해의 구성 '피해자'가 성폭력의 맥락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화할 경우 '피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피해자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에 대해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 '제보자'를 중심으로 사건화할 경우 '구체적 피해'보다는 발언의 문제에 대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피해의 구성에 있어 가해교수와 '피해자'가 구체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따져봐야 한다. 교수와 '피해자'가 사전에 맺고 있는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이는 교수가 지도교수이거나, 학생과 친분이 있을 경우, 학생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교수는 특정한 맥락에서 발언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특정한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사전에 한 학생과 진로상담을 하면서 '여자니까 이러한 진로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충고하였고, 학생이 이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자. 강의 시간에 교수가 '여학생들은 ...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여학생들은 고집피우지 말고 길을 찾아보라.'고 말했을 때, 그 발언은 해당 여학생에게 특정한 맥락을 가지는 것이고, 강의 중 '발언' 외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폭력 '피해'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 해결 및 징계 '피해자'개인에 대한 사과, 사과 및 공론화, 징계, 재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교수가 사과, 혹은 공론화에 저항할 경우 가해교수가 강의를 중단하게 하고 다른 강의자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후 징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징계의 경우, 강의를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징계가 될 수 있고, 해당 과목을 다른 학기에 다시 맡아도 되는지, 해당 강의가 아닌 다른 강의를 해도 되는지, 교수라는 직분을 박탈할 것인지, 연구나 행사 책임자의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차 피해 방지 교수가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지도교수, 논문심사자 등), 해당 지위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해당 과의 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의 참여를 제한받도록 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사건화하는 경우

사건화 및 공론화 발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혹은 '피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익명의 '제보자'가 사건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보자'를 통한 사건화는 곧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공론화의 방식²⁵⁾은 '제보자'가 결정할 수 있다.

성폭력의 구성 성폭력은 발언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발언의 정황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내재적인 비판에 있어서는 '제보자' 뿐 아니라 발언에 문제를 느끼는 어떤 사람의 의견도 포함될 수 있다.

해결 및 징계 공개 사과나 징계, 재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교수가 사과, 혹은 공론화에 저항할 경우 가해교수의 강의를 중단하게 하고 다른 강의자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후 징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징계의 경우, 강의를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징계가 될 수 있고, 해당 과목을 다른 학기에 다시 맡아도 되는지, 해당 강의가 아닌 다른 강의를 해도 되는지, 교수라는 직분을 박탈할 것인지, 연구나 행사 책임자의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차 피해 방지 익명의 '제보자'에 있어서 2차 피해란, 누가 제보자인지 알아내려는 행위, 위협 등을 말한다. 교수의 위협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해당된다. 또한 조교를 통한 조사 등은 사전에 철저히 방지되어야 한다. 문제는 제보자의 익명성이 항상 보장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이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해당 강의 중 여학생이 몇 명되지 않을 경우 등, 제보자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제보자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지목될 경우, '제보자'는 '2차 피해'의 '피해자'로 존재하며, 이 후의 해결절차는 '사건화와 동시에 피해자가 드러나는 경우'에서의 해결 및 징계,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따른다.

2.2.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변인들의 지위 제한

성폭력이 공론화될 때, 여러 가지 주체들이 불필요하게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 고려대학교에서 K교수의 언어성폭력²⁶⁾이 공론화되고, 성폭력 해결

25) 구두, 서면을 통한 사과/강의실에서의 사과 등

및 처벌이 요구되었을 때, 수업 조교가 수업에 들어와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조사하였으며, 해당 수업의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항의하였고, 대학 당국은 해당 교수에게 안식년을 주었다. 이 때문에 '교수의 문제'는 사장되고 이 사례에서 개입한 각 주체들의 자의적인 판단만이 난무하였다. 이에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사건화에 있어서 개입해서는 안되는 -그러나 개입가능성이 농후한- 주변인들의 지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조교는 사건의 '객관적 조사자'를 자임하였다. 하지만, 강의에 대하여 '조교'는 교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고 없음을 조사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을 '다수결'로 판단하려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단, 추가적으로 '피해'나 문제지점을 찾기 위한 조사의 경우 조교 등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해결을 위해서

앞서 제시한 해결의 원칙들은 교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때만이 실현가능하다. 그리고 대학 당국만이 제도를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대학 당국이 의지를 가져야만 대학의 성폭력 상담소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학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강의실 성폭력을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강의평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은 강의평가나 신고 등으로 문제 교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교수들에 대한 강의 중 언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각 대학의 여성운동단체들은 당분간 대학 및 교수사회 창피주기(shaming)를 통해 교수사회의 각성 및 해결절차의 제도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26) 사례① 각주 1)과 같다.

환경적 성폭력을 공략하다

- 인식하기 / 명명하기

1. 환경적 성폭력의 실제 사례 및 문제점 분석

(1) 사례 1.

△△년도 △대 학내자치기구A 선본명 '주색잡기'와 '○○만형배 축구대회'정책 '주색잡기'라는 선본명을 걸고 나온 △대 학내자치기구A의 선거가 종료된 이후 당시 총여학생회에서는 해당 선본의 이름과 선본의 정책 중 하나인 '○○만형배 축구대회'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 자보를 붙였다. 이에 대해 학내자치기구A의 학생회장은 "선본 이름은 중의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며, 그것이 성폭력인지 잘 모르므로 사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만형배 축구대회' 정책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의 지적에 일부 동의하여 "축구대회를 여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 후 총여학생회의 2차 입장 자보가 게시되자 학내자치기구A측은 "세상은 아름답고 주색잡기는 주색잡기일 뿐이다"라며 총여학생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총여학생회와 학내자치기구A의 입장서가 한 차례씩 더 게시되었고, 총여학생회에서 각 단위 학생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토론을 제안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문제 지점 1. 선본명 '주색잡기'가 갖는 성폭력성

'주색잡기'란 단어는 "남자가 술과 여자를 탐하며 노는 것"이라는 의미의 왜곡된 남성 놀이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학내자치기구A는 예비역과 3,4학년 여/남학생을 대표하는 직선기구²⁷⁾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정체

27) 사례1의 학내자치기구A는 기존의 총여비역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의 업무가 합쳐진 기구로 예비역 지원이나 졸업앨범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학내 예비

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선본명'에 남성 '주체'가 여성 '객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구성원을 명백히 배제시켰다. 남성 중심적인 단어를 선본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치기구A를 '남성적'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주색잡기'라는 말 속에는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희롱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러한 성폭력적 단어들은 여성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갖가지 제약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측의 입장 공방 과정에서 학내자치기구A 측은 문제의 선본명이 가지는 중의성에 대해 선본명 '主色잡기'는 '주인의 색을 확립하자'는 뜻이고, 자신들은 그러한 중의적 의미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성폭력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단어의 본래 뜻을 중의적 의미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핑계일 뿐이며, 무엇보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피해를 느끼는 입장 혹은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맥락을 통해 그것들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불쾌해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성폭력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감당하고 사과해야 한다.

문제 지점 2. 정책 '○○만형배 축구대회'가 갖는 성폭력성

학내자치기구A는 예비역과 3,4학년 여/남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역이 중심이 됨으로써 3,4학년 여학우들은 배제되는 운영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형배 축구대회'는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히 성폭력적인 정책이다.

우선 '만형'이라는 단어는 남성이 남성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단어이다. 이러한 행사명 자체가 여성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여/남 공동의 행사에 여학우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존의 축구대회는 남학생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고 여학생들이 단지 응원부대 뿐이었다. 그렇듯 반복적인 경험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정책으로 내세운 것 또한 여성 배제적이며

역과 복학생, 예비졸업생이 구조적으로 약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혀 학번/나이/성별 권력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학내에서 그들의 별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직선기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발제의 주제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의 논의는 잠시 유보하도록 한다.

남성 중심적이다. 실질적인 여학생의 참여가능 여부가 의심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는 다시금 기존의 문화에서 남성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보조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자리 매김을 강화할 뿐이다.

(2) 사례 2. ◇◇년도 B학부 새내기새로배움터 단대 행사 내 프로그램

◇◇년도 새내기새로배움터 당시 B학부 단대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행사장에서 우연히 학내 언론사 기자가 성폭력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건물에서 새터를 진행하고 있던 타 학부 학생회 간부에게 이를 제보하였다. 새터가 끝난 뒤 다수의 목격자들에 의해 위 사건이 총여학생회에 제보되었고, 학내 언론사를 통해서도 문제의 장면을 담은 사진이 총여학생회에 입수되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여학생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서 남학생이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는 팀 대항 게임과 기마 자세를 취한 남학생의 허벅지위에 여학생이 발을 딛고 올라가 양팔을 벌린 자세를 취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의 허리를 붙잡고 오래 버티기를 하는(일명 '타이타닉') 팀 대항 게임이었다.

이후 5월 경 총여학생회에서 B학부 학생회장을 비롯한 몇 사람과 면담 자리를 가졌으나 진지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양측 모두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마련된 추가 논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듬해 새터를 준비하는 확대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총여학생회의 발의로 반성폭력 내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신임 B학부 학생회장단을 포함한 학생회 간부 다수가 기존의 B학부 새터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갖는 성폭력성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문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논의 진행이 불가하였고, 총여학생회에서 기존에 입수한 문제 프로그램 사진 자료를 새터 장소에 게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문제 지점

위 문제의 두 게임은 진행 과정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이 발생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성폭력적 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여/남을 1:1로 짝 지워 성적인 연상이 가능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해당 학생들을 모두 성적대상화 하고 있다. 동시에 이성애중심주의에 기

반한 커플 위주의 문화를 여과 없이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지닌 구성원들이 성적 박탈감을 느끼는 한편, 다수에 의한 일방적이고 소수 배제적인 문화를 재차 경험하게 하는 문제를 지닌다. 특히 두 게임 모두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입각한 남녀의 고정된 성 역할을 재현함으로써 그러한 문화를 유지·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팔굽혀펴기 게임의 경우 여성은 남성 아래 누운 채로 마치 '정상위' 체위를 연상시키는 섹슈얼한 상황연출에 필요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뿐이며,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은 오로지 남성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일명 '타이타닉' 게임 역시 남성의 육체적인 힘이 강조되는 동시에 여성의 작은 체구 내지는 가벼운 몸무게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는 한편, 힘든 일은 오로지 남성이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문제를 가진다.

2. 환경적 성폭력 사례에서 적들의 방패를 부숴보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폭력 사건이 성립될 수 없다?!

두 사례는 어느 집단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일으킨 성폭력 문제라는 특성을 지닌다. '피해자'로 자칭하고 나서기가 웬지 부담스러운 상황, 그리고 '가해자'는 슬쩍 숨어버리면 그만인 상황에서 특정한 피해자 내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가해의 구도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특정 피해자의 가시화와 문제제기, 그리고 특정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기존의 성폭력 사건 해결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존의 '정형화 된 성폭력'이 갖는 구도를 지니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구도와 별개로 위 사례는 성폭력 사건으로 성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화 된 성폭력'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양상의 성폭력들을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폭력이 문제제기 되어온 방식에 학내 구성원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건지(아니면 성폭력 사건은 무조건 회피하고 보려는 의지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성폭력을 부정하는 데에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구성원들이 피해/가해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성폭력을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은 뭔가 문제라고는 인식하더라도 '성폭력'의 명명을 하면서 그만큼의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에는 여전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주된 관심이 '성폭력'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이 아닌, 누군가(피해자)의 피해 사실이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 내지는 운 나쁘게(?) 딱 걸린 누군가(가해자)의 이후 안위에 대한 일시적인 흥미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반성폭력 운동의 전략이 피해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여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성폭력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방식을 취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자'의 '무책임함'!

공교롭게도 위의 두 사례에서 총여학생회의 문제제기를 받은 해당 자치기구 측의 입장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환경적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책임 집단 측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향후 발전적 움직임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된다. 사례 1의 책임자는 ①성폭력인지 잘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반응과 ②총여측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반응, ③남성 중심적인 행사에 구체적인 대안 없이 여학생 참여를 이끌겠다는 일단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를 발전적으로 진행시키는 데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해결'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사례 2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총여학생회에서 문제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한 성폭력성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자치단위 소속의 한 여학생을 앞세워 여성도 그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B학부 측의 태도는 마치 성폭력이 그것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성폭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수로 우열을 가려서 결정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이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책임 있게 자성하는 모습이 아닌, 어떻게든 지적을 피해가고 보려는 무책임한 것이다.

특히 사례2의 B학부 측은 최근에도 학부 특성이나 전통 혹은 학부 내 위

계절서가 광고함을 빌미로 '여장남자'와 같은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까지 했다. 남성 중심적 분위기가 농후한 자치단위 특성이나 그러한 단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성폭력적 인습 등은 분명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며, 깨뜨리기에 매우 힘겨운 벽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발생 사실이며, 그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힘을 모아 문제제기하고 그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수의 학내 자치기구 책임자들이 반성폭력 문화 정착을 요원하게 하는 문제적 지형들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하고 경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적 문화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하는 등 그러한 문화를 발생시키는 무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단위에서 비롯된 성폭력에 옹당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책임자'는 존재의 정체성을 부정함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외부 단위에서 성폭력 사건 문제 삼으면 자치권 침해?!

사례2에서 B학부 측은 앞서 언급했듯이 소속 여학생을 앞세워 '자치단위 내부의 여학생도 성폭력으로 문제 삼지 않는데, 왜 타 단위에서 난리냐'며 성폭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치권'이라고 하는 영역다툼으로 일축해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치권'이란 '성폭력을 일으켜도 좋은 권리'를 결코 포함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 '자치권'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기도 할뿐더러²⁸⁾ 설사 '자치권' 영역 밖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해선 안 되는 이유란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장소에 있었던 구성원에 대해 피해/가해 진영을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타 단위' 내지 '외부인'으로 상정하는 학내 구성원 역시도 그러한 환경적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의 개념은 기존의 '성폭력 피해' 개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된 것으로써, '넓은 의미로써의 피해' 내지 '간접적인 피해' 등과 같은 기존의 용례가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사례 2의 문제 상황을 학내 언론의 보도나 사진 자료 혹은 지인들의 전언을 통해 파

28) 이를테면 B학부 소속 구성원 중에는 총여학생회 소속 구성원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악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극심한 성적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으며, 그것만으로도 문제 상황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고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²⁹⁾

환경적 성폭력에서 주목해볼만 한 것은 정책이나 프로그램 설정에 있어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 혹은 책임자가 그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와 비교해볼 때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집단의 대표자 또는 임원진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재자처럼 모든 업무를 내키는 대로 집행하는 극단적인 상황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위 '민주적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이 다양한 상황에서 집단 내 소수자 혹은 약자의 권익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란 최종적으로 책임자들의 관점과 입장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학내에서 한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대 100미팅을 진행했던 실제 사례나 학내 행사에서 주관 학생회가 섭외한 연예인이 성폭력적 언어를 내뱉었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성애중심 커플 위주의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이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 하는 표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그들이 설정한 '자치' 범위 내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소속 구성원들이며 그들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집단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자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그러한 '권력'에 대한 성찰과 고민 없이 '자치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자 내지 책임자의 권력 오/남용이 될 뿐이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권' 방조이며,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볼 때 방관하는 주위 집단 책임자들 역시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9) 본 토론회 자리에서 '피해'의 개념 정립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본 발제에서는 환경적 성폭력을 다루는 데에 있어 기존 '피해' 개념의 확장이 유효한 지점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덧붙여 본 발제의 3-1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환경적 성폭력은 피해/가해 구도를 넘어 성폭력의 심각성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제제기 될 수 있으며, 그 심각성에 주목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3. 환경적 성폭력을 공략하자

학생자치조직이 환경적 성폭력에서 스스로를 구출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치규약'의 설정 및 실천이 이미 사용된 바 있다. 학생자치규약은 설정 과정의 관성화나 실효성의 한계와 같은 취약지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문제를 공동체의 책임영역으로 가져감으로써 공론화를 통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데에 여전히 유의미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학생자치규약이 환경적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이나 토론회 등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좀 더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주최하는 특정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로부터 자치규약의 내용을 공유하고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참가서약' 받기와 같은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동체의 책임자와 사안별 주체 등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관련한 별도의 특수전문교육을 받도록 제도적 조건을 구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충분하고도 책임 있는 공식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환경적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학생들의 자치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덧붙여 교육부/정부 역시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각 대학에 촉구해야 하며, 대학의 그러한 노력 여부를 평가에 면밀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정부 측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각 대학의 필수 이수 과목 영역에 젠더의식을 확립하고 성평등 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여성주의 교양수업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사회는 성폭력 문제에 너무도 관대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은 용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환경적 성폭력은 그렇듯 성폭력 개념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성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환경적 성폭력을 인식하고 명확히 이름 붙일 수 있음은 곧 그것을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시작과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환경적 성폭력에 대해 인식하고 명명함을 통해 주저 없이 환경적 성폭력을 공략하자.

